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16(금) 09:00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0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하였음.

3. 검토내용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2021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773,455,816,030	821,253,761,229	655,249,227,148	166,004,534,081
일반회계	760,574,643,710	808,844,988,720	647,451,262,768	161,393,725,952
특별회계	12,881,172,320	12,408,772,509	7,797,964,380	4,610,808,129

회 계 별	이월액(D)			보조금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35,386,207,040	33,269,458,661	0	10,889,559,363	△195,351,571	0	86,654,660,588
일반회계	34,886,207,040	33,074,229,961	0	10,791,224,963	△195,351,571	0	82,837,415,559
특별회계	500,000,000	195,228,700	0	98,334,400	0	0	3,817,245,029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212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7,734억 5,500만원보다 477억 9,700만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의 80%인 6,552억 4,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60억원이며,

- 이 중 명시이월비 353억 8,600만원, 사고이월비 332억 6,900만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106억 9,400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5,400만원임.

2)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86,654,660,588	32,072,968,000	54,581,692,588	
일반회계	82,837,415,559	28,692,533,000	54,144,882,559	
특별회계	3,817,245,029	3,380,435,000	436,810,029	

○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5,40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286억 9,200만원과 특별회계 33억 8,0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541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4억 3,600만원을 합한 545억 8,100만원이 2022년도 추경재원임.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15,715,733,000	7,938,082,000	7,219,952,980	246,097,470	472,031,550
일반회계	15,545,733,000	7,938,082,000	7,219,952,980	246,097,470	472,031,550
특별회계	170,000,000	0	0	0	0

○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7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48억 5,900만원보다 108억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사업』 외 25건 79억 3,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2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2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4,487	4,470	12,732	8,262	38,957
자활기금	935	114	234	120	1,049
노인복지기금	353	0	4	4	353
양성평등기금	402	54	105	51	456
청년미래기금	1,003	530	530	0	1,532
재정안정화기금	17,101	203	203	0	17,303
재난관리기금	5,482	2,181	4,956	2,775	7,663
옥외광고발전기금	1,242	△105	138	242	1,138
도로굴착복구기금	1,674	810	2,106	1,296	2,484
중소기업육성기금	4,515	655	4,276	3,622	5,170
남북교류협력기금	59	42	51	9	101
환경미화원재난차상금대여기금	504	△15	27	42	49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73	16	29	13	289
식품진흥기금	943	-14	73	87	929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44억 8,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27억 3,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2억 6,17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9억 5,740만원임.

나. 의회사무국 결산(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계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의회 사무국	3,349,884	2,993,932	355,952	0	313,202	42,750	

○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현액은 33억 4,988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4%인 29억 9,393만 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595만 2천원(10.6%)임.

1)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금액	집행률	금액	불용율	
계	3,349,884	2,993,932	89.4	355,952	10.6	
선진의회상정립	1,062,575	909,958	85.6	152,617	14.4	
의정 활동 지원	86,911	53,834	61.9	33,077	38.1	
열린의회운영	28,666	21,491	75.0	7,175	25.0	
의정 활동 홍보	86,513	82,512	95.4	4,001	4.6	
구의회청사관리	109,850	107,768	98.1	2,082	1.9	
의회비지원	725,635	620,025	85.4	105,610	14.6	
의회장비보강	25,000	24,328	97.3	672	2.7	
행정운영경비	2,287,309	2,083,974	91.1	203,335	8.9	
인력운영비	2,145,917	1,998,452	93.1	147,465	6.9	
기본경비	141,392	85,522	60.5	55,870	39.5	

○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3억 5,595만 2천 원(불용율 10.6%)을 정책(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선진의회상 정립 부문의 집행잔액은 1억 5,261만 7천 원(불용율 : 14.4%)이고,
-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2억 333만 5천 원(불용율 8.9%)임.

가)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계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비 고
계	355,952	0	313,202	42,750	
의정 활동 지원	33,077	0	31,604	1,473	
열린 의회 운영	7,175	0	0	7,175	
의정 활동 홍보	4,001	0	0	4,001	
구의회청사관리	2,082	0	0	2,082	
의회비지원	105,610	0	85,983	19,627	
의회장비보강	672	0	0	672	
인력 운영비	147,465	0	142,693	4,772	
기본경비	55,870	0	52,922	2,948	

○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3억 5,595만 2천 원(불용율 10.6%)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3억 1,320만 2천 원으로 88.0%임.
- 지출잔액은 4,275만원으로 12.0%임.

○ 집행잔액 총액에서 88.0%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등 : 31,604천원
→ 코로나19로 체육행사 미개최 및 해외연수 미실시
- ‘의회비지원’ 사업 중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 85,983천원
→ 코로나19로 의원 세미나 및 해외연수 미실시, 대면교육 미실시
- ‘인력운영비’ 사업 중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등 : 142,693천원
→ 소속 직원 인상변동 및 인사발령에 따른 보수 등 차액 발생
- ‘기본경비’ 사업 중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 52,922천원
→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최소화 및 상반기 체련대회 미실시

○ 집행잔액 총액의 12.0%를 차지하고 있는 지출잔액의 세부내역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 등 : 1,473천원
- ‘열린의회운영’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 7,175천원
- ‘의정홍보활동전개’ 사업 중 사무관리비 등 : 4,001천원
- ‘구의회 청사관리’ 사업 중 시설비 등 : 2,082천원
- ‘의회비지원’ 사업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 19,627천원
- ‘의회장비보강’ 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 672천원
-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 중 국민건강보험금 등 : 7,720천원

※ 결산서 232p 참고, 심사보조자료 5~8p 참고

나)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 유
			감액	증액	
2건		76,350	8,500	8,500	
구의회 청사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18,000	7,500	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관련 업무로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부족분에 따른 전용
	사무관리비 (201-01)	29,000	0	7,5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10,500	1,000	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관련 업무로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부족분에 따른 전용
	공공운영비 (201-02)	18,850	0	1,000	

○ 예산절감분이 발생한 자산취득비 예산을 850만원 감액하고, 청사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5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 전용함.

※ 결산서 275p 참고, 심사보조자료 8p 참고

다. 검토의견

가) 연도별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금액	비율(%)	
2021	3,349,884	2,993,932	355,952	10.6	
2020	3,138,218	2,929,747	208,470	6.6	
2019	3,175,181	2,962,573	212,608	6.7	
2018	3,354,711	2,890,845	463,866	13.8	

나) 의회사무국 집행잔액(불용율 30%이상)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의정활동지원	행사운영비	13,000	3,648	9,352	72
	국내여비	4,152	0	4,152	100
	국외업무여비	17,500	0	17,500	100
	공무원 교육여비	600	0	600	100
열린의회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800	9,800	5,000	34
의회비지원	의원국내여비	11,500	0	11,500	100
	의원국외여비	45,500	0	45,500	100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5,200	100	5,100	9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4,000	1,185	2,815	70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25	105	120	53
	국내여비	61,152	9,150	52,002	85
	정원가산업추진비	2,080	1,160	920	44

-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3억 5,595만 2천 원으로 2020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4.0% 증가 하였으며,
- 이는 의정활동지원 및 열린의회운영, 의회비지원 등의 세부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와 세미나, 해외연수, 대민 현장활동, 교육 등이 축소나 취소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음.
- 향후 사업별 목적과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며, 일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심도있는 심사와 정확한 계상을 통한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지방회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